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의 안 번 호	369
------------	-----

제 의 년 월 일 : 2019년 2월 12일

제 의 : 경기도의회 의장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5조에 의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으로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함.

□ 활동기간 및 위원수

-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로부터 12개월간
○ 위 원 수 : 15명(더불어민주당 14, 바른미래당 1)

□ 선임위원 명단

정당	의원명	상임위	선거구	정당	의원명	상임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현삼	여가교위	안산7	더불어민주당	김미숙	제2교육위	군포3
더불어민주당	장대석	제1교육위	시흥2	더불어민주당	유근식	제2교육위	광명4
더불어민주당	황대호	제2교육위	수원4	더불어민주당	손희정	여가교위	파주2
더불어민주당	김미리	제2교육위	남양주1	더불어민주당	김장일	경제위	비례
더불어민주당	강태형	문체위	안산6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농정위	용인4
더불어민주당	최승원	건설위	고양8	더불어민주당	정운경	문체위	군포1
더불어민주당	권정선	복지위	부천5	바른미래당	김지나	경제위	비례
더불어민주당	지석환	복지위	용인1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관련규정

□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5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각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선임한다. 이 경우 각 대표의원은 총선거 최초 임시회의 집회일로부터 2일 이내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만료 전 3일 이내에 의장에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추천할 수 있다.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추천은 그 의원의 소속 의원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협의하고, 소속 의원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의장이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소속 의원단체는 추천일 현재 의회사무처에 등록된 교섭단체 외에 정당별 의원협의회 등 순수 의정활동단체로 제한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선임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2일내에 하여야 한다.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8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년 11월 29일, 김현삼 의원 등 25명
상정일자	제332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2018년 12월 14일 상정 및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주요내용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구성 -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부터 12개월, - 위원수 : 15명 이내

의회운영위원회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12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1월 29일, 김현삼 의원 등 25명
- 나. 회부일자 : 2018년 12월 4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33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2018년 12월 14일 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의결) -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김현삼 의원)

가. 주 문

-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 내 각종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불합리한 처우, 근로인권 피해 사례 등을 파악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위 원 수 : 15명 이내로 한다.
-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 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안이유

- 세계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말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1조 5,300억 달러로 세계 1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3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2017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잠정 집계액은 2만 9,745달러이며, 금년 중으로 3만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하는 등 우리나라의 경제는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성장하였음
- 하지만 지난 7월 15일 발표한 한국은행의 “최근 해외 경제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2017년 기준 총 2,024시간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인 1,759시간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멕시코와 코스타리카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대한민국은 최장시간 근로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으며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지나친 과로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 또한 2019년도 최저임금도 금년도 7,530원 대비 10.9% 인상된 8,350원으로 상향되는 등 정부 차원에서도 근로자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다수의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휴수당, 야간휴일 근로수당은 물론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는 등 사업주들의 불법적인 행태로 인해 근로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또한 텔레마케터,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경우 사측의 실적강요와 같이 불합리한 지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급은 물론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부당 해고 등 사측의 부당한 처우에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노동3권이 인정되지 않는 등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 한편 지난 10월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 2,004만 5천명 중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금년도 8월 기준, 661만명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하는 등 우리사회에 상당수의 비정규직이 존재하고 있음

- 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지시, 폭행과 폭언, 성희롱 등 직장 내 만연한 갑질과 횡포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시 불이익을 우려해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못하고 침묵하는 등 근로인권 피해는 심각한 상황임
- 이에 현 정부에서는 연간 근로시간 1,800시간대로 축소, 1만원 이상의 최저임금 설정, 특수고용직근로자들의 노동3권 보장,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을 주요 공약사항으로 제시하였고 이를 정책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또한 경기도에서는 현재 도민의 인권피해 구제 및 사전 예방 등 지원을 위해 “경기도인권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민선7기가 출범한 이후에는 노동정책을 전담하는 “노동정책과”를 신설하고,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등 근로자들의 권익을 향상하고 갑의 횡포를 원천적으로 막는 공정경제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이에 경기도의회에서도 도내 특수고용 근로자, 비정규직 등 소외된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불합리한 처우, 인권 피해사례 등 실태를 파악하고, 노동 관계자나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등 근로자들의 인권 및 권익향상을 도모하고자 경기도의회 내에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

3.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 전진석)----- [별첨 1]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첨부서류

-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별첨 2]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과

- 발의자 : 김현삼 의원 등 25명
- 발의일 : 2018. 11. 29.
- 회부일 : 2018. 12. 4.

2. 제안이유

- 우리나라 2017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우리나라의 경제는 비약적으로 성장하였으나, 근로자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이 OECD 회원국의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고 임금체불 및 야간·휴일 근로수당은 물론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는 등 다수 사업주들의 불법적인 행태가 여전하며 특수고용직근로자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노동3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음. 금년도 8월 기준 비정규직이 661만명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폭행·폭언, 성희롱 등 근로인권 피해도 심각함.
- 문재인 정부는 근로시간 축소, 최저임금 상향조정,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인권센터의 설치 및 운영,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독립적인 노동정책 담당부서의 신설과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도내 소외된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불합리한 처우 등의 실태파악 및 대책을 마련하여 근로자들의 권익향상을 도모하고자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경기도 내 각종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불합리한 처우, 근로인권 피해 사례 등을 파악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함.
-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 부터 12개월로 함. 다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 할 수 있음.
- 위 원 수 : 15명 이내로 함.
-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함.

4. 검토의견

□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개요

-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1조 등에 근거하여 구성되는 것으로,
- 본 구성 결의안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여전히 사업주들의 탈법적이고 불법적인 고용행태가 난무하고 열악하고 불합리한 근무여건에 처한 경우 뿐 아니라 근로인권을 침해받는 근로자들이 많으므로 경기도 내 비정규직 근로자 등 소외된 근로자들의 근무여건과 불합리한 처우, 인권침해 상황 등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근로자들의 권익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것임.

□ 특별위원회 구성 목적의 타당성

- 우리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의 근로권을 보장하고 있고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 최고규범과 관련 법률이 지향하는 바와 달리 현실에서는 아직 근로자에 대한 대우나 복지가 균등하지 못하고 심지어 사측에 의해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하거나 위협하고 비위생적인 근무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근로자가 허다한 실정임.
- 「2016 경기도 비정규직 백서」에 따르면, 2016년 8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 1,963만명 중 비정규직은 874만명으로 임금노동자의 44.5%에 이르고, 경기도의 비정규직은 임금근로자 515만명 중 158만명으로 30%에 이름(참고자료 2, 참고자료 3).
- 고용노동부의 「2017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총액은 정규직의 69.3% 수준인바, 2016년도에 비해 3.0%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정책적 영향을 부인하기 힘들므로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총액 >

(단위: 원, %)

구 분	'15년	'16년	'17년
전 체	15,978 (-4.3)	16,709 (4.6)	17,381 (4.0)
정 규 직	17,480 (-5.1)	18,212 (4.2)	18,835 (3.4)
비 정 규 직	11,452 (-0.1)	12,076 (5.4) <66.3>	13,053 (8.1) <69.3>
기간제근로자	11,575 (-2.5)	12,028 (3.9)	12,878 (7.1)
단시간근로자	11,524 (-0.7)	11,270 (-2.2)	12,242 (8.6)
일일근로자	13,158 (4.5)	14,905 (13.3)	15,804 (6.0)
파견근로자	10,727 (5.3)	11,451 (6.7)	11,670 (1.9)
용역근로자	8,589 (-2.3)	9,064 (5.5)	10,492 (15.8)

* () 전년대비 증감률, < >는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수준

(출처: 고용노동부 「2017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 그리고 비정규직의 산업재해보험 가입률은 96.8%로 높은 수준이지만 그 외 보험가입률은 55~69% 수준으로 전년대비 하락하였고, 비정규직 중 파견 및 용역근로자, 기간제근로자의 사회보험가입률은 85% 이상으로 높은 수준인 반면 일일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는 산업재해보험을 제외하고는 50~60% 내외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 현황 >

(단위: %, %p)

구 분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16년	'17년	'16년	'17년	'16년	'17년	'16년	'17년
전 체	90.7 (1.4)	89.1 (-1.6)	89.7 (1.3)	88.9 (-0.8)	90.1 (1.4)	89.1 (-1.0)	98.1 (0.5)	97.6 (-0.5)
정 규 직	95.7 (0.3)	94.7 (-1.0)	98.3 (0.4)	98.0 (-0.3)	98.2 (0.4)	97.8 (-0.4)	98.3 (0.3)	97.8 (-0.5)
비 정 규 직	72.1 (5.4)	68.7 (-3.4)	59.4 (3.9)	58.1 (-1.3)	56.7 (4.0)	54.9 (-1.8)	97.4 (1.0)	96.8 (-0.6)
기 간 제 근 로 자	86.9 (-0.1)	85.7 (-1.2)	94.9 (2.3)	92.7 (-2.2)	89.7 (1.2)	86.9 (-2.8)	98.8 (0.5)	98.5 (-0.3)
단 시 간 근 로 자	69.0 (4.0)	67.5 (-1.5)	65.6 (6.0)	65.3 (-0.3)	63.7 (7.3)	63.0 (-0.7)	95.5 (1.3)	93.4 (-2.1)
일 일 근 로 자 *	57.4 (11.4)	50.2 (-7.2)	11.1 (2.6)	12.0 (0.9)	11.1 (2.1)	11.0 (-0.1)	98.1 (0.7)	98.5 (0.4)
파 견 근 로 자	94.6 (3.9)	91.7 (-2.9)	94.9 (3.6)	92.1 (-2.8)	95.0 (4.3)	91.4 (-3.6)	98.8 (2.1)	94.4 (-4.4)
용 역 근 로 자	93.5 (-1.1)	93.5 (0.0)	93.8 (1.3)	92.3 (-1.5)	91.6 (1.8)	86.9 (-4.7)	97.9 (-0.4)	98.3 (0.4)

* 일일근로자의 사회보험가입률은 사회보험에 따라 가입대상 범위(예,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는 적용 제외)가 달라 차이가 큼.

* () 전년대비 증감으로 %p임.

(출처: 고용노동부 「2017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 중앙정부는 기간제 및 하도급 근로자나 열정페이라는 명목의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수련생 등을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등 고용주와 근로자간의 적법하고 합리적인 근로조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경기도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근로자

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현실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참고자료 4).

- 그러나 최근 정부는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 근로여건을 향상시키고 일자리 늘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노동시장의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을 아우르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최근 실업자 수가 7개월 연속 100만명대를 기록하는 ‘고용쇼크’가 강타하면서 일자리 창출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는 형세임.
- 그러나 2017년 2월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국내 거주 외국인 증가와 경기도의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내 제조업 분야의 82.8% 인력이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고 경기도의 인력 부족률은 300인 미만 기업이 2.9%로, 전국 평균(2.4%)보다 높고 300인 이상 기업(0.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보고서는 열악한 작업환경과 임금조건 불일치 등의 사유로 내국인이 중소기업을 기피하고 있으므로 외국 인력의 노동시장 수요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였음.
- 이렇듯 중소기업은 여전히 구인난에 시달리는 것이 고용시장의 현실이므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고용주의 탈법적·불법적 행태를 근절시키는 것이 선제적으로 해결될 필요성이 큼.
- 또한 근로자, 특히 외국인근로자를 둘러싸고 직장에서의 차별 대우, 욕설이나 모욕, 임금 체불, 불법 체류자 단속과 강제퇴거의 공포, 폭행, 성폭행 등 다양한 유형의 인권 침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¹⁾ 취약계층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할 필요성도 큰 바, 경기도는 경기도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그 동안 인권

1) 한건수·설동훈, 이주자가 본 한국의 정책과 제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p.57

을 비롯하여 노동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활동을 펼쳐왔고 내년 2월에는 노동권과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노동권익센터를 개소할 예정임(참고자료 5).

- 수도권에 인구와 기업체가 집중되어 있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문제는 경기도가 당면한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고, 근로권을 보장하기 위한 단순한 일자리 늘리기보다 근로권을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실현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할 때,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 목적은 설득력이 있다고 보임.
- 다만, 본 특위 구성 결의안에서 규정한 ‘경기도 내 각종 사업장’의 범위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모두 포함하는 것인지, ‘열악한 근로 환경과 불합리한 처우’라 함은 어느 정도를 뜻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근무여건에 처한 근로자란 비정규직을 지칭하는 것인지 저임금 정규직 근로자나 외국인근로자도 포함하는 것인지, 비정규직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 그 범위와 개념이 다소 광범위하고 상대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본 특별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대상과 목적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겠음.

5. 특별위원회 구성 요건

-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의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위원회 구성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임.
-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12개월로 하고,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바, 활동기간과 위원 수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판단됨.

6. 특별위원회 활동 보좌 관련

- 노동정책 관련 업무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8항에 따라 행정2부지사 소속 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인권보호 관련 업무는 동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행정1부지사 소속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5조제2항 및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주된 업무가 속한 경제과학기술전문위원실에서 보좌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2항)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윤리특별위원회 등 3개 이상의 상임위원회 소관사항과 관련된 경우 특별전문위원이, 그 밖의 특별위원회는 주된 업무가 속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보좌

7. 관련 상임위원회 의견 조회 결과

- 동 안건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1조제2항²⁾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의견을 조회한바,
- 경제과학기술전문위원실에서는 본 결의안은 경기도민의 노동과 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인권센터’를 설치 및 운영 중에 있고 내년부터 근로자들의 인권 및 권익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경제노동실에 ‘경기도노동권익센터’가 설립예정인보다 적극적인 업무수행이 기대되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인권 및 권익향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심의·감사, 정책개발 등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가 이미 수행하고 있으므로, 특별위원회의 업무와 중복되지 않도록 의제선정과 운영에 있어 서로 공유·협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2) 제11조(특별위원회)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 관련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참고 자료

1. 관계법령 발췌서
2. 우리나라 전체 비정규직 규모
3. 경기도 전체 비정규직 규모
4. 경기도 노동정책 관련 규정
5. 경기도 인권센터 노동사건 처리 현황 및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 계획
6. 의견조회에 따른 회신의견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56조 (위원회의 설치) ①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특별위원회의 설치) ①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1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기간의 종료 시까지 안건이나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 것으로 본다.
④ 특별위원회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본다.
⑤ 특별위원회의 정수는 21명 이내로 한다.
⑥ 특별위원회는 그 활동을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연장할 경우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중간보고서 및 활동기간 연장사유를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의장은 특별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인력지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기도지사에게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참고 2

우리나라 전체 비정규직 규모

(2016년 8월)

구분		수(천 명)				비율(%)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임금노동자(1)		12,966	5,196	1,464	19,626	66.1	26.5	7.5	100.0
정규직(2=1-3)		10,889			10,889	55.5			55.5
비정규직 (3=①+...+⑧, 중복제외)		2,077	5,196	1,464	8,737	10.6	26.5	7.5	44.5
고용 계약	임시근로	1,745	5,196	1,464	8,405	8.9	26.5	7.5	42.8
	장기임시근로①		3,613	1,141	4,754		18.4	5.8	24.2
	한시근로②	1,745	1,583	323	3,651	8.9	8.1	1.6	18.6
	(기간제)	1,653	1,083	193	2,929	8.4	5.5	1.0	14.9
근로 시간	시간제근로③	270	1,660	553	2,483	1.4	8.5	2.8	12.7
근로 제공 방식	호출근로④			863	863			4.4	4.4
	특수고용⑤	2	471	22	495	0.0	2.4	0.1	2.5
	파견용역	561	265	72	898	2.9	1.4	0.4	4.6
	(파견)⑥	126	66	9	201	0.6	0.3	0.0	1.0
	(용역)⑦	435	198	63	696	2.2	1.0	0.3	3.5
	가내근로⑧	3	16	22	41	0.0	0.1	0.1	0.2

참 고 3

경기도 전체 비정규직 규모

구분	2015. 08			2016. 03			2016. 08		
	임금근로자	비정규직	비율(%)	임금근로자	비정규직	비율(%)	임금근로자	비정규직	비율(%)
계	19,312	6,271	32	19,233	6,156	32	19,627	6,444	33
서울특별시	4,041	1,277	32	3,934	1,228	31	4,036	1,294	32
부산광역시	1,256	406	32	1,279	418	33	1,279	417	33
대구광역시	917	293	32	893	277	31	906	298	33
인천광역시	1,203	356	30	1,224	377	31	1,255	414	33
광주광역시	554	197	36	525	176	34	552	186	34
대전광역시	596	207	35	615	202	33	622	217	35
울산광역시	466	115	23	457	128	28	462	138	30
경기도	5,000	1,569	31	5,073	1,555	31	5,149	1,577	31
강원도	505	228	45	487	207	43	507	235	46
충청북도	578	203	35	581	188	32	584	203	35
충청남도	818	284	35	807	268	33	869	292	34
전라북도	576	234	41	567	220	39	578	235	41
전라남도	531	209	39	538	223	41	551	218	40
경상북도	888	291	33	896	280	31	921	301	33
경상남도	1,166	314	27	1,134	315	28	1,124	325	29
제주도	218	89	41	222	95	43	234	93	40

참고 4

경기도 노동정책 관련 규정

번호	조례 및 규칙명	소관 부서
1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과
2	경기도 공무원직권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	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과
3	경기도 근로권 보장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과
4	경기도 근로기본 조례	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과
5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과
6	경기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	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과
7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과
8	경기도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 지원 조례	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과
9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과
10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과
11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과
12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과
13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과
14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과
15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시행규칙	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과
16	경기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규정	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과

경기도 인권센터 노동사건 처리 현황 및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 계획

경기도 인권센터 노동권 관련 접수·처리 현황(18.12.5.기준)

□ 경기도 인권센터 업무 및 조사대상

○ 경기도 인권센터 개소 : '17.8.25.

- (주요업무) 도민 인권침해 상담·조사 및 권고, 경기도 인권보호관 운영 등
- (접수방법) 방문,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 우편
- (조사대상) 경기도 소속기관·단체에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했거나 이를 인지한 개인 및 단체

<소속기관, 단체>

- ▶ 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 (시·군 포함) ▶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 ▶ 도의 사무위탁기관(위탁사무수행) ▶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

□ 인권센터 상담·처리 현황(연도별)

('17.8.25.~'18.12.5)

구 분	합 계	상담 (종결)	구제신청				
			조사중	취하 (신청 철회)	각하	조사 후 기각	권고결정
계	189	182	1	4	1	1	0
2017년	26	25	0	0	0	1	0
2018년	163	157	1	4	1	0	0

□ 노동권 관련 현황

- 전체 상담건수(189건)중 18건으로 9.5%의 비중 *'17년 4건, '18년 14건
- 노동권 관련 접수건은 대부분이 민간 기업과 관련된 것으로 인권센터의 조사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침해여부 상담과 구제방법을 안내함

□ 노동권 관련 상담내용

연번	접수번호 (접수일자)	침해된 권리유형	상담 내용	처리 결과
1	2017-007 (17.9.15.)	사회권 (노동권)	사측의 퇴사사유 명시 거부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제한에 대한 대처방법 문의	상담종결 (법률상담실(노무)안내)
2	2017-011 (17.10.11.)	사회권 (노동권)	군부대 운영 복지관의 노무문제 및 인격권 침해에 대한 문의	상담종결 (추가안내 거절)
3	2017-014 (17.11.1.)	사회권 (노동권)	사기업의 부당해고 관련 대처방안 문의	상담종결 (법률상담실(노무)안내)
4	2017-022 (17.12.12.)	사회권 (노동권)	건물관리소장이 재계약후 퇴사강요, 반말·욕설을 하여, 고용상태 유지 및 관리소장 퇴사를 원함	상담종결 (기초조사/고용노동부안내)
5	2018-004 (18.1.11.)	사회권 (노동권)	직업학교 파견근로자의 퇴사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충격에 대한 보상 문의	상담종결 (법률상담실안내)
6	2018-006 (18.1.12.)	사회권 (노동권)	임금체납에 대한 고용노동부 신고정보 문의(중국동포)	상담종결 (외국인인권센터안내)
7	2018-030 (18.4.18.)	사회권 (노동권)	구청에서 구내식당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조리사가 해고 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	상담종결 (기초조사/법률상담실안내)
8	2018-042 (18.5.8.)	사회권 (노동권)	공기업의 고용승계 불이행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	상담종결 (법률상담실(노무)안내)
9	2018-044 (18.5.11.)	사회권 (노동권)	사기업의 부당한 업무 지시에 대해 아르바이트생이 근로계약준수 요청 후 발생한 퇴사협박에 대한 대처방안 문의	상담종결 (법률상담·노동부신고안내)
10	2018-047 (18.5.16.)	사회권 (노동권)	대학 교수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진정을 원함	상담종결 (정보제공·국가인권위안내)
11	2018-074 (18.7.12.)	사회권 (노동권)	기능직 운전직원의 탄력근무 관련 노무상담 문의	상담종결 (법률상담실(노무)안내)
12	2018-078 (18.7.20.)	사회권 (노동권)	교육청에서 정규직 전환을 위한 용역직원 재채용 과정에서 기숙사 사감만 차별한 것에 대한 해결을 원함	상담종결 (국가인권위 진정안내)
13	2018-109 (18.8.28.)	사회권 (노동권)	계약직 직원인 동료가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억울하여 도움을 요청	상담종결 (법률상담실(노무)안내)
14	2018-115 (18.9.4.)	사회권 (노동권)	버스회사가 기사에게 과도한 업무를 주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문의	상담종결 (법률상담실(노무)안내)
15	2018-121 (18.9.13.)	사회권 (노동권)	사기업 자회사의 관리자가 계약직원의 고용을 부당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위험물 취급에 대한 보호장구를 지급하지 않아 구제신청을 원함	상담종결 (고용노동부신고 안내)
16	2018-123 (18.9.17.)	사회권 (노동권)	복지시설의 자활근로사업 담당자가 근태관련 인사처리에 대해 이의 제기를 원함	상담종결 (주무부서신고 안내)
17	2018-128 (18.9.27.)	사회권 (노동권)	사기업이 이전하며 근로자에게 출퇴근 지원을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대응방안 문의	상담종결 (법률상담실(노무)안내)
18	2018-152 (18.11.22.)	사회권 (노동권)	개인요양원에서의 부당해고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요양보호사의 이용인 폭행에 대한 대처방안 문의	상담종결 (해결방법 안내)

- 도민 노동권 보호 안전망 구축을 위한 -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설치 · 운영 계획

I

추진 배경 (현 노동환경 및 문제점)

□ 불황의 장기화로 체불임금 등 노동법 위반 증가 추세 속에, 비정규직의 열악한 노동환경 지속

- 경기도에서 2,496억 원(전국 대비 22%)의 체불임금 발생으로 17개 시도 중 최다 기록

- 체불임금 현황

(단위 : 명, 억원)

구 분	2018. 8월		2017. 8월		증·감	
	근로자수	체불액	근로자수	체불액	근로자수	체불액
전 국	235,700	11,274	217,774	9,207	8.2%	22.5%
경기도	53,221	2,496	47,656	1,799	11.7%	38.7%

<출처> 고용노동부 2018 체불임금 현황

- '08~'17년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규모는 25%, 임금은 1/2 수준에 그쳐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열악

□ 노동시장 다원화에 따른 청(소)년 등 취약계층 노동권 침해 가속화

- 청년 임금 근로자의 55%(약49만명)가 임금 관련 부당 대우 경험의 만연된 노동권 침해 현상 속에서, 특성화고교 실습생 사망사고* 다수 발생

< *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발생 사례 >

- (17.11월) 제주도 음료 제조공장에서 작업중이던 이모(고3, 19)군 설비에 협착, 사망
- (17.1월) 전주 이동통신사 콜센터에서 근무하던 홍모(19)양이 극심한 업무스트레스로 자살
- (16.5월)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점검 중 김모(20)군, 열차에 치여 사망

◆ 최근, 취약계층의 노동권 침해 가속화 현상은 **중앙집권적 노동권 보호의 문제점***을 노출하여 道 차원의 노동행정 추진 필요성 증대

- * ① **근로감독관 절대인력 부족 (총1,800여명 / 1인당 1,700사업장 담당)**
- ② **사후감독·처벌 위주의 노동행정 실시 (예방과 사후지원 서비스기능 부족)**

■ 노동권 보호를 위한 예방적 서비스(모니터링·교육·상담 등)와 침해 발생에 따른 권리구제까지 통합 제공하는 道 차원의 노동행정 추진 필요

II

설치 근거 및 기능

□ 설치 근거

○ 『경기도 근로기본 조례(16.12.16)』 제12조 (근로자 권익보호 전담기관 설치)

- ① 도지사는 근로정책 시행계획과 근로자 권리 및 인권 보호를 위하여 “경기도 근로자 권익보호전담기관”을 설치하거나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전담기관에 노동 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노동관련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역을 구분하여 권역별 전담기관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 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의 운영에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주요 기능

○ 노동권 보호를 위한 통합지원 시스템 *모니터링 → 교육홍보 → 상담구제 구축·운영

- 모니터링 : 비정규직 등 취약 노동계층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 교육홍보 : 대상별 맞춤형 노동권 보호 및 노동존중 인식 확산 홍보
- 상담구제 : 노동권보호 상담 지원 및 권리보호 구제 지원

○ 노동자 지위 향상 정책 발굴 및 시·군 확산 거점센터 역할 수행

- 급변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선제적 노동권 보호 및 권익 확장을 실현 할 수 있는 정책의 발굴 및 31개 시·군 확산 방안 제시

○ 취약 노동계층 사각지대 보호정책 발굴 및 지원 사업 강화

- 청소년, 외국인 노동자 등 도내 취약계층 지원 정책 발굴 및 추진 강화로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 ZERO화

III

설치 및 운영 계획

I

시설 및 조직(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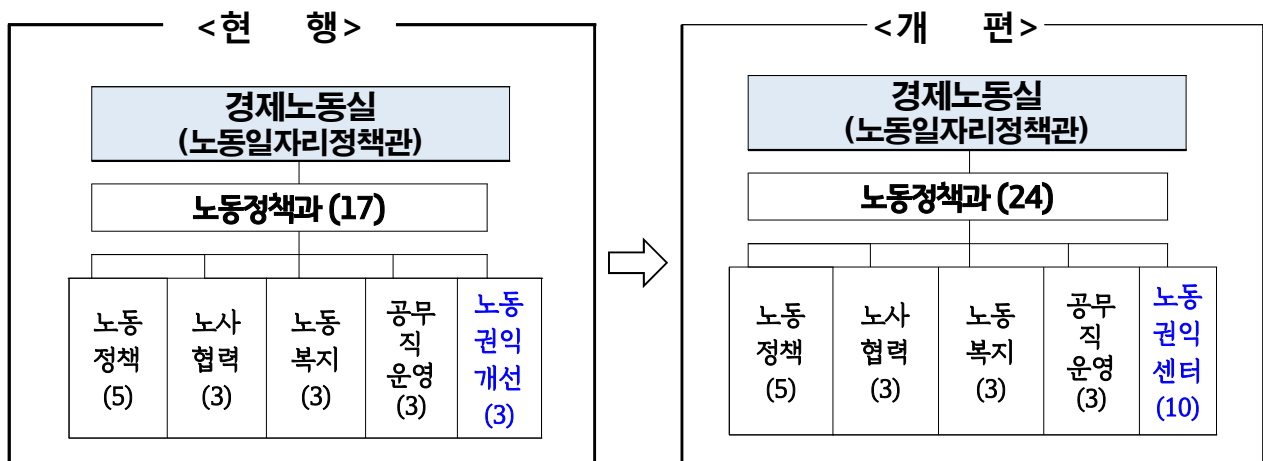
1 시설 설치 (안)

- 시설 명칭 : 『경기도노동권익센터』 ※ (구성안) 사무실, 상담실
- 운영 시기 : 2019. 2월 개소(예정)
- 설치 장소 : 북부청사(별관 3층)
 - 경기 북부지역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및 노동정책 연계 추진 용이
- 운영 방법 : 道 직접 운영
 - 그간 특정 단체 노동자 위주의 한정적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노동자가 이용 가능한 통합 서비스 제공 및 도-시군 연계 강화를 위한 거점 기능 수행 필요

2 조직 구성 (안)

○ 기본 방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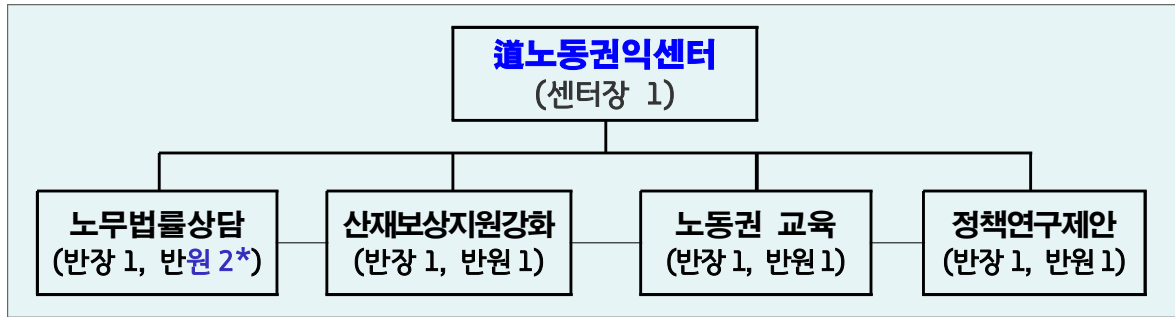
- 센터 조직 및 정원은 경제노동실 노동정책과 내 소속
- 센터의 인력구성 및 업무배치는 노동권 보호의 필수 기능 중심으로 우선 탑재



○ 인력(안) 및 추진업무 : 10명, 4개 분야

- 인력(안) 10명 : ① 사업인력(8명) + ② 운영지원(2명)
 - ① 사업인력 - 센터장 1, 직원 7 (시간선택 가급 2, 나급 4, 다급 1)
 - ② 운영지원 - 행정6급 1, 행정7급 1
- 추진 분야 : 노무법률상담·산재보상지원강화·노동권교육·정책연구제안

❖ 조직도(안)



* 기존 근무인력 1명(시간선택제 나급, 김종우 노무사) 포함

3 신규 인력채용(안)

○ 채용 필요성

- 다양한 유형의 노동권 침해 사례와 구제 방안 분석, 산재 관련 보상지원 강화 등 전문성과 경험을 요하는 업무 수행으로 전문 인력 선발 필요

○ 채용 인원 : 총 7명

- 센터 운영 총인력 10명 중 7명 임기제 채용(센터장 1, 직원 6명*)

소 속	채용분야	채용등급	인원	비고
경 제노동실 노동정책과	센터장1(권익센터팀장)	- 일반임기제 5급	1명	주35 시간 근무
	직원 6 (반장 4, 반원 2)	- 시간선택제 6명 (가급 2, 나급 3, 다급 1)	6명	
	노무법률상담	-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	1명	
		-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	1명	
	산재보상 강화	-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	1명	
	노동권 교육	-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	1명	
		-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	1명	
	정책연구제안	-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	1명	

※ 센터 총인력 : 10명 (신규채용 7 + 기 배치 시간선택제 나급 1 + 행정6급 1 + 행정7급 1)

○ 채용 방법 : 경력경쟁 임용

○ 채용 기간 : 최초 1년 후 5년 범위 내에서 필요 시 연장

○ 채용 자격기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한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Ⅱ

역할 및 주요 기능

⇒ '2019년 추진 사업계획' 및 '자체 홈페이지 구축' 등 세부계획 별도 보고

① 센터 역할

- 도민 노동권의 침해 ZERO화 실현을 위한 **노동권보호 통합 서비스 지원**과 **취약계층 보호 노동정책의 선도적 발굴·시행**
- **道-시·군-노동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노동정책 기본방향 공유 및 노동현안의 협력적 해결방안 등 제시**로 도내 빈틈없는 노동권 보호 정책 확산의 거점기능 수행

道 노동권익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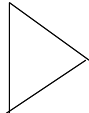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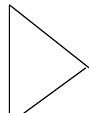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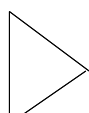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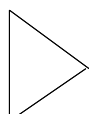
노동권 보호 통합 서비스 지원	도-시·군 네트워크 구축의 거점 역할
- 전도민 노동권 보호 통합 자원 체계 운영 (보호 교육 · 노동권 보호 상담 · 권리구제) -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를 위한 도차원의 선도적 보호 정책 발굴·시행 (고용구조, 임금개선 및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사업 지원 등)	- 도·시군·노동단체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노동정책 기본방향 공유 및 현안의 공동해결 노력) ⇒ 도내 빈틈없는 노동권 보호 정책 시행 확산  도내 빈틈없는 노동권 보호 정책 시행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경기도 노동권익센터가 도·시·군·노동단체와 협력하여 노동정책 기본방향 공유 및 현안 공동해결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는 31개 시·군 노동정책지원센터와 연결되어 있다.

② 주요 기능

- (**권리구제 상시 법률 상담**)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관련 노동자 권리 구제를 위한 노동·법률 상시 상담 체계 구축지원
 - ※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 (**산재보상지원 강화**) 산재 노동자에 대한 상담·권리구제를 통한 신속한 보상지원 서비스 제공. 산재 예방 및 지원 정책 추진 등

- **(노동권 교육·홍보)**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맞춤형 근로권 보호교육 추진 및 道 노동자 지원 서비스 홍보
- **(정책 연구 제언)** 도내 취약근로자(청소년, 외국인 등) 근로여건 개선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발굴시행으로 노동사각지대 ZERO화 추진
- **(도-시군 노동 네트워크 구축)** 道(센터·단체)-시군(복지시설·단체)등 노동단체간 협력과 소통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역할 분담 및 협업 추진

< 센터 추진 사무(안) >

노 무 법률상담(3명) (반 장 1 , 반 원 2)		· 맞춤형 노동권 보호 및 권리구제 상시 지원 · 노동권 신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 ·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 대응 검토
산재보상지원강화(2) (반 장 1 , 반 원 1)		· 산업재해예방 기본계획 시행 및 보상지원 강화 · 산업재해 취약업종 실태조사 및 예방사업 발굴 · 산재예방정책(중양)의 도내 적용 실태 검토 및 개선
노 동 권 교 육 (2) (반 장 1 , 반 원 1)		· 감정노동자 대표직종 모니터링 및 노동권 준수교육 · 감정노동자 치유프로그램 시범 운영 · 청소년 등 취약계층보호 맞춤형 노동권 교육 · 공공부문 노동법 인식 교육 및 노동상담 매뉴얼 발간
정 책 연 구 제 안 (2) (반 장 1 , 반 원 1)		· 노동법 위반 집중 사업장 실태조사 ·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실태 조사 · 노동정책 추진 협력 네트워크 구축

IV

소요예산

□ '19년 소요예산액 : 463백만원(신규사업비 400, 사무환경 조성비 63)

※ 신규채용 인건비 : 323백만원(道 기준인건비 활용)

□ '19년 사업비

○ 신규 사업비 : 8개 사업 400백만원

(단위:천원)

구 분	사 업 명	소요예산
합 계	8개 사업	400,000
노무법률상담 지원	① 노동침해 대응 매뉴얼 및 사례집 발간	50,000
산재보상 강화 지원	② 산재 취약업종 실태조사 및 예방	100,000
노동권 교육	③ 감정노동 대표직종 모니터링, 준수 교육	60,000
	④ 감정노동자 치유프로그램 시범 운영	30,000
	⑤ 공공 및 민간분야, 노동법 교육	60,000
정책연구 제안	⑥ 노동정책 포럼	100,000
	⑦ 道노동정책 안내 책자 발간	
	⑧ 노동법 위반 집중사업장 실태조사(업종규모 등)	

※ 道 직접 추진 마을노무사 사업비(5억원) 별도

□ 사무환경 조성비

○ 사무환경 조성·운영비 : 63백만원

- (사무실·상담공간 조성비) 50백만원, (자산취득비) 컴퓨터 등 13백만원

□ 신규 채용 인건비

○ 인건비 추계 : 323백만원 (道 기준인건비 활용)

- 센터장 1명, 직원 6명 채용 시

(단위:천원)

채용분야	인원	연 봉		소요예산 (연봉하한액×인원)	비 고
		상 한	하 한		
합 계	7명			322,265	
센터장(일반임기제 행정5급)	1명	-	58,004	58,004	
반장(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2명	-	50,753	101,506	
반원(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3명	63,098	42,043	126,129	
반원(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1명	51,569	36,626	36,626	

V

협조사항**< 부서별 협조사항 >**

-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설치·운영 관련 소요예산 편성 협조 (예산담당관)
- 시간선택제 정원 배정 및 채용 협조 (기획담당관, 인사과)
- 센터 설치장소(북부청사 별관) 사용 공간 확보 협조 (회계담당관 청사운영팀)

VI

추진 일정

- 2018. 12월 : 센터 근무인력 채용(시간선택제 임기제 6명)
- 2019. 1월 : 센터 운영방향 및 2019년 추진사업 보고
- 2019. 2월 : 센터 개소식 개최 및 운영
 - 노동권 보호 통합 서비스 및 노동단체(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현황 안내

의견조회에 따른 회신의견

[경제과학기술전문위원회]

인구가 미래입니다



경기도의회사무처



수신 의회운영전문위원
(경유)

제목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의견 회신**

1. 의회운영전문위원실-5348(2018.12.5.)호와 관련입니다.
2.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회신합니다.

가. 안건명 :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나. 의 건

- 결의안에서 밝히고 있는 특별위원회의 구성 이유는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불합리한 처우를 비롯한 경기도민의 인권 피해사례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노동관계자나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등 경기도민의 노동과 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 최근 경기도에서는 경기도민의 인권피해 구제 및 사전 예방 등 지원을 위해 ‘경기도인권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는 근로자들의 인권 및 권익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경제노동실에 ‘경기도노동권익센터’가 설립예정으로 보다 적극적인 업무수행이 기대되고 있음.
- 다만, 근로자들의 인권 및 권익향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심의·감사, 정책개발 등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가 기 수행하고 있으므로, 특별위원회의 업무와 중복되지

않도록 의제선정과 운영에 서로 공유·협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끝.

경제과학기술전문위원

입법조사관	입법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결 2018. 12. 7.
협조자			
시행	경제과학기술전문위원실 (2018. 12. 7.)	접수	의회운영전문위원실-5375 (2018. 12. 10.)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 전문위원실 (매산로3가) / http://www.ggc.go.kr		
전화번호	031-8008-7435	팩스번호	031-8008-7435 / hsbaek@gg.go.kr / 부분공개(5)

국민행복시대! 지방자치가 책임집니다.

[별첨 2]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현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8
----------	-----

발의연월일 : 2018년 11월 29일

발 의 자 : 고찬석 · 권정선 · 김경호
김용성 · 김원기 · 김은주
김인순 · 김종찬 · 김태형
김현삼 · 남종섭 · 박근철
박옥분 · 박창순 · 서현옥
손희정 · 안기권 · 이진연
장태환 · 전승희 · 조성환
진용복 · 최갑철 · 최승원
한미림 의원 (총 25명)

1. 주 문

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 내 각종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불합리한 처우, 근로인권 피해 사례 등을 파악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위 원 수 : 15명 이내로 한다.

라.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안이유

- 세계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말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는 1조 5,300억 달러로 세계 1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3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2017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잠정 집계액은 2만 9,745달러이며, 금년 중으로 3만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하는 등 우리나라의 경제는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성장하였음
- 하지만 지난 7월 15일 발표한 한국은행의 “최근 해외 경제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2017년 기준 총 2,024시간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인 1,759시간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멕시코와 코스타리카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대한민국은 최장시간 근로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으며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지나친 과로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 또한 2019년도 최저임금도 금년도 7,530원 대비 10.9% 인상된 8,350원으로 상향되는 등 정부 차원에서도 근로자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다수의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휴수당, 야간휴일 근로수당은 물론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는 등 사업주들의 불법적인 행태로 인해 근로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또한 텔레마케터,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경우 사측의 실적강요와 같이 불합리한 지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급은 물론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부당 해고 등 사측의 부당한 처우에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노동3권이 인정되지 않는 등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 한편 지난 10월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 2,004만 5천명 중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금년도 8월 기준, 661만명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하는 등 우리사회에 상당수의 비정규직이 존재하고 있음

- 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지시, 폭행과 폭언, 성희롱 등 직장 내 만연한 갑질과 횡포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시 불이익을 우려해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못하고 침묵하는 등 근로인권 피해는 심각한 상황임
- 이에 현 정부에서는 연간 근로시간 1,800시간대로 축소, 1만원 이상의 최저임금 설정, 특수고용직근로자들의 노동3권 보장,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을 주요 공약사항으로 제시하였고 이를 정책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또한 경기도에서는 현재 도민의 인권피해 구제 및 사전 예방 등 지원을 위해 “경기도인권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민선7기가 출범한 이후에는 노동정책을 전담하는 “노동정책과”를 신설하고,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등 근로자들의 권익을 향상하고 갑의 횡포를 원천적으로 막는 공정경제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이에 경기도의회에서도 도내 특수고용 근로자, 비정규직 등 소외된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불합리한 처우, 인권 피해사례 등 실태를 파악하고, 노동 관계자나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등 근로자들의 인권 및 권익향상을 도모하고자 경기도의회 내에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

3. 관련 법규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1조

참 고 자 료

○ 관계법규 발췌

1. 지방자치법 (제56조)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3.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1조)

【지방자치법】

-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지방자치법시행령】

- 제56조(특별위원회의 설치) 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 제11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기간의 종료 시까지 안건이나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 것으로 본다.
- ④ 특별위원회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본다.
- ⑤ 특별위원회의 정수는 21명 이내로 한다.
- ⑥ 특별위원회는 그 활동을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⑦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연장할 경우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중간보고서 및 활동기간 연장사유를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⑧ 의장은 특별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인력지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기도지사에게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